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 대상 등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도심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2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감면대상 조정 및 추가(안 제4조의2)

-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기준 변경
 - 1회 2시간 무료 2시간이후 50% 감면 → 50% 감면
- 저공해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나.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안 제7조)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개선 및 위탁대행료 산정 기준 규정

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안 별표 7)

-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하여 1/2 범위내 강화

구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			원룸형 주택	
	60㎡ 초과		60㎡ 이하	30㎡ 이상	30㎡ 미만
	85㎡초과	85㎡이하			
당초	75㎡	95㎡	세대당 0.7대	0.6	0.5
변경	75㎡	95㎡	세대당 1대	0.9	0.7

라. 대규모 단지조성사업 노외주차장 설치 규모(안 제13조의2)

- 사업부지 면적의 0.6% → 1.2% 상향 조정

마. 주차장법 위임사항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규제 정비

-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삭제(안 제12조)
- 기계식주차장 설치율 제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 총 주차대수의 30% 초과 설치 금지
 - 총 주차대수 20대 이하 설치 금지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 조정(안 제15조)
 - 사업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 노상 및 노외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확보대수 규정(안 제18조)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 과징금의 처분 중 가산금 징수 항목 삭제(안 제26조)
- 부설주차장 부지의 '주차장' 지목 요건 삭제(안 별표 7)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영주차장”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주차요금은[별표1]과 같이하고,민영주차장”을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 민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주차장관리운영상”을 “주차장 관리·운영상”으

로, “하향조정 할수”를 “조정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 :”를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부과한다.”를 “부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의2 및 조례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를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부과한다.”를 “부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주차요금감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동차의 구조상”을 “구조상”으로, “곤란할 경우”를 “곤란한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차량”을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조설비”를 “구조·설비”로, “차량”을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판매행위 차량”을 “판매행위를 하는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차량”을 “자동차”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의 표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다.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라.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관리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외주차장설치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위치 안내표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2. 노외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 제1항제2호 각 목을 준용한다.

3.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표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위탁받을수”를 “위탁받을 수”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미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수탁자가 구미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법인	경쟁계약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m^2) × 인접지공시지가 × 면수 × 2

$5/1,000 \times \text{점용기간(년)} \times \text{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text{점용면적(m}^2\text{)} \times \text{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times 25/1,000 \times \text{점용기간(년)} \times \text{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1\text{대당 주차구획면적(m}^2\text{)} \times \text{면수} \times \text{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times 25/1,000 \times \text{점용기간(년)} \times \text{운영일수}/365$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노외주차장을 설치, 폐지, 변경한 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로, “당해 주차장설치”를 “해당 주차장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블럭”을 “블록”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을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되”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수방법으로 하며,”로,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을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징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은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1. 주차권 발행 이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주차장을 폐지한 경우

2.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회수 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주차요금을 반환

2. 정기 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반환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사용 제한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노상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4항에 따라”로, “화물자동차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제외)”를 “화물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 외”로 한다.

제11조 제목 “(주차구획선의 표시등)”을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외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평행 주차방식”을 “평행주차형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않을”을 “아니하는”으로, “주차방식으로”를 “주차형식으로”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주차장설치 심의등)”을 “(주차장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제13조의2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으로,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가. 도시철도건설사업(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철도로 한정한다)

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text{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 인원}/210) \times (\text{철도연장(km)}/8)$$

나.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2퍼센트

2. 제1호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제13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 제목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본문에 따라”로, “설치 비용”을 “설치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을 “제1호의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으로,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중”을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의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제4호 본문 중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을 “제2호의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으로, “포함 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를 “해당 노외주차장이”로,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를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로, “산정할 수 있다”를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3분의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물”을 “제1호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을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차구획”을 “제2호의 주차구획”으로, “18평방미터”를 “18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2평방미터로 한다”를 “12제곱미터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날로 부터 납부한 금액을[별표1]의 월정기(주,야간)주

차요금”을 “날로부터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월정기(주간, 야간) 주차요금”으로, “만료일 까지”를 “만료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관리 하는자”를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다음 각호의 경우”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단독주택”을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 단독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타용도”를 각각 “타 용도”로, 같은 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이용시간,주차요금 및 기타”를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그 밖에”로,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을 “제6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1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④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웃간경계담장”을 “이웃간 경계담장”으로, “경우 : 세대당 130만원”을 “경우: 세대당 130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비용”을 “제1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신청서”를 “시장은 설치신청서”로, “현장확인”을 “현장 확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급 받고자”를 “지급받고자”로,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호서식의”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의”로, “제출”을 “시장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신청서”를 “지급청구서”로 한다.

제24조 중 “년2회”를 “연 2회”로,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 관리한다”를 “작성 · 관리한다”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비용”을 “제1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을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택지개발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도시철도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개발사업의 경우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개발사업 및 시설물의 경우 제1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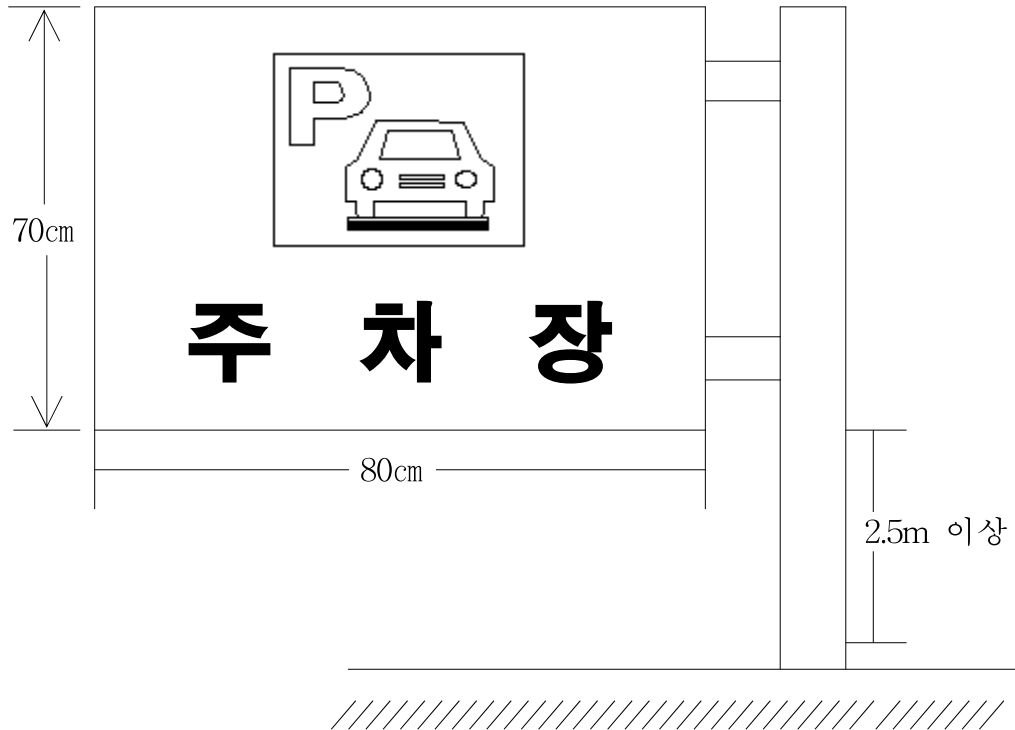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제4조의2 관련)

감면범위	감면대상	비 고
1.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부터 7급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상 사용증 제시 차량) ○ 공무수행중인 시 소유 자동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도장애 이상의 환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제·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이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부착 자동차(1년간 면제)	관련 증명서 제시
2. 주차요금의 50/100 감면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산모수첩 및 신분증 등)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다만, 셋째 이상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함(3자녀 이상 가정 증명자료 제시)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감면)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관련 증명서 제시
3. 1회 2시간 무료, 2시간 후 주차요금의 50/10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관련 증명서 제시

[별표 3]

주차장 표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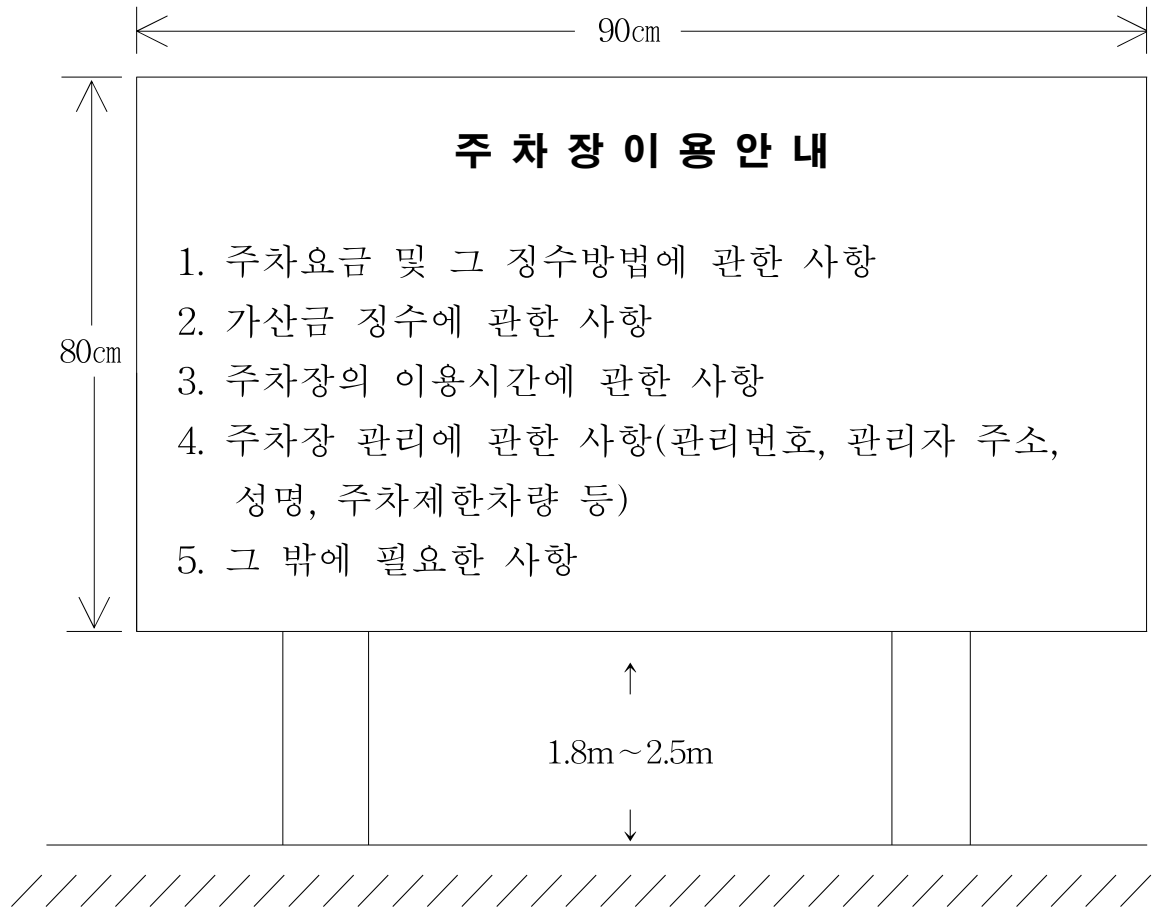


<비고>

-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격 : 외부표지판(가로80cm×세로 70cm)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30cm×세로 25cm)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 처리 하여야 한다.

[별표 4]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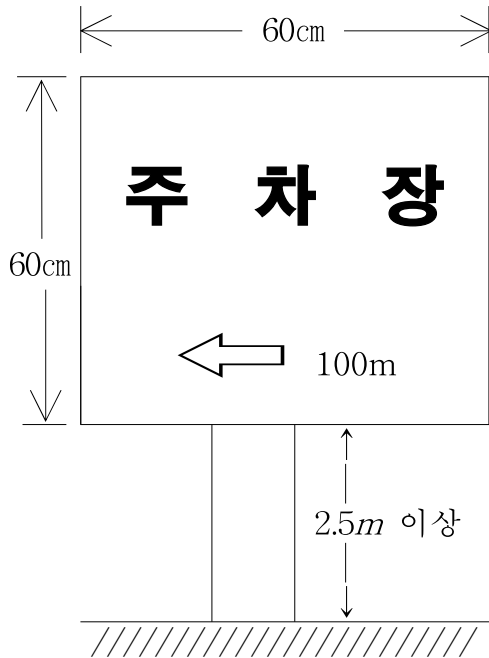
구 분	재 료	색 체	
		바 탕	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	알루미늄판	녹 색	흰 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판	녹 색	흰 색
민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판	청 색	흰 색

※ 색체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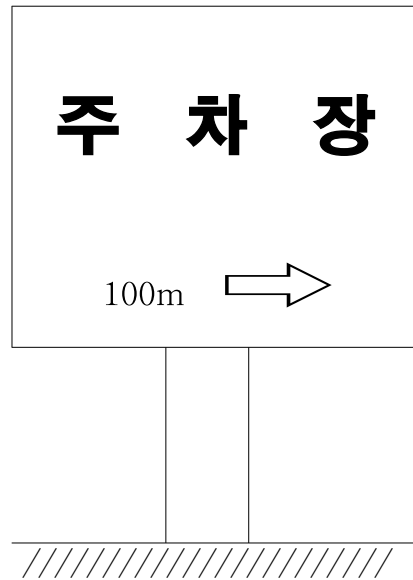
[별표 5]

노외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제6조 제2항 관련)

(예1)



(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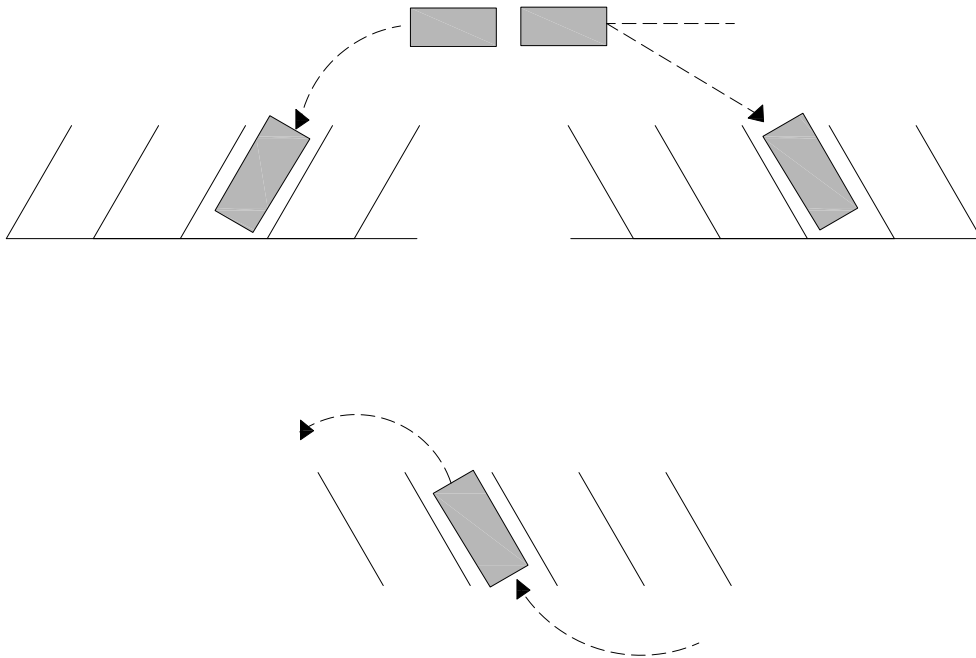
<비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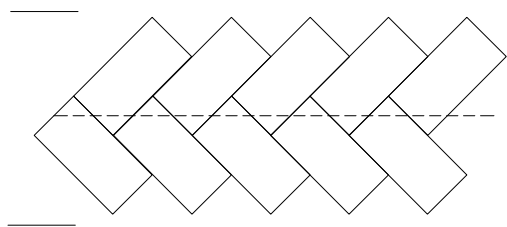
[별표 6]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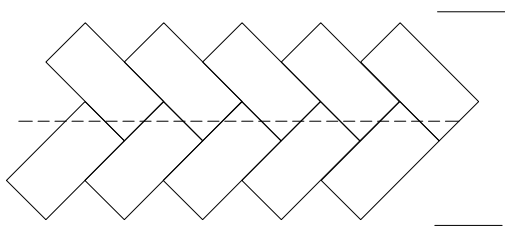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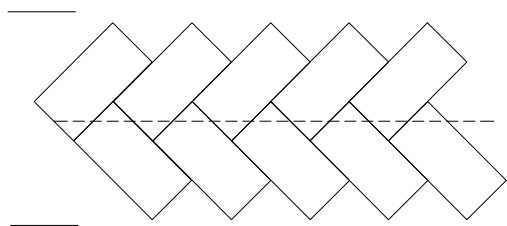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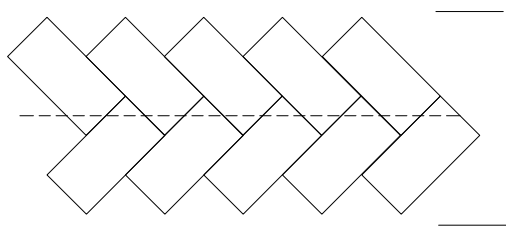
1. 주차방법



다. 45° 교차주차(A)



라. 45° 전진주차(B)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시설면적/7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음식점과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80㎡당 1대로 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이하:1대 - 시설면적150㎡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세대당(오피스텔은 호실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은 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으로 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30㎡미만은 0.7대 전용면적 30㎡이상은 0.9대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 당 10대(홀의 수 ×10), 골프연습장 : 1타석 당 1대(타석의수 ×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비고 -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

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제11호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1호 각 목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앞면)

9cm

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대표자 :	
차량번호 :	
사용기간 :	. . ~ . . 까지
이용주차장 :	구미시 공영주차장
	20 . . .
구미시	장

6cm

(뒷면)

주의사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별지 제2호서식]

내 집안 주차시설 설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차장 현황	주차장의 위치			
	주차장의 형태			
	공사기간		규모	m ² , 대
	완료(예정일자)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안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차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 2. 주차시설 예정지 현황사진 1매 3.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각 1통				

[별지 제3호서식]

내 집안 주차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차장 현황	주차장위치			
	주차장형태		규모	m ² , 대
	설치신청일		설치완료일	
	공사금액		보조금액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안
주차시설을 설치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구미시장 귀하

첨부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전, 중, 후) 각 3매

[별지 제4호서식]

보 조 금 지 급 청 구 서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공 사 금 액		보 조 금 액	
	은행계좌번호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안
주차시설의 설치보조금을 청구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①

구 미 시 장 귀하

내 집안 주차시설 관리카드

(앞면)

설치일			규모		
위치					
설치자			전화번호		
주차형태	직각주차(), 평행주차(), 이웃간공동주차(), 기타()				
설치형태	담장철거(), 대문개조(), 이웃간담장철거(), 기타()				
공사금액			보조금액		
조사 및 조치 내용	조사일시	위반내용	조치내용	특기사항	

(뒷면)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일 시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특 기 사 항
주 차 장 전 경 사 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필요-----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뜻은 ----- --.
1. 공영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공영주차장”이란	구미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	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부설주차장을 설		<삭 제>		

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별표1]과 같이하고,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장이 주차장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금을 하향조정 할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산금을 부과 한다.

1.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제1항의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 민영주차장-----

-----. 다만, -----
----- 주차장 관리·운영상 -----
----- 조정할 수 -----
-.

②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 부과

2. 법 제8조의2 및 조례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할 때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의2(주차요금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 내지 7급)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

2.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 부과

제4조의2(주차요금감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유공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 : 면제(증명서제시)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1회 2시간 무료, 2시간 후 50퍼센트 감면(증명서제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면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 제시

5. 공무수행중인 시 소유 차량 : 면제

6. 국.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이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부착차량 : 1년간 면제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도장애이상의 환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차량(환자증명서 제시) : 면제

8.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대한민국전물군경 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의 회원 : 면제(증명서제시)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 : 면제(증명서제시)

10.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50퍼센트 감면(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 산모수첩 및 신분증 등)

11.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다만, 셋째 이상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함): 50퍼센트 감면(3자녀 이상 가정 증명

자료 제시)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 차량
5. 기타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1. 구조상 -----
----- 곤란한 자동차
2. -----
----- 자동차
3. ----- 구조·설비-----
----- 자동차
4. -----
----- 판매행위를 하는 자동차
5. 그 밖에 -----
----- 자동차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의 표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 표

<신 설>

③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
에 관한 사항

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다.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
한 사항

라.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노외주차장설치자는 법 제18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
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
치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위치
안내표지: 별표 5의 기준에 따
른다.

2. 노외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
내 표지: 제1항제2호 각 목을
준용한다.

3.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표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삭 제>

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④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
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
를 위탁받을수 있는 자(이하"관
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

<삭 제>

<삭 제>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

- 위탁받을 수 -----

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
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
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적인 법인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단위 로 선납

<신 설>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구미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
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수탁자가 구미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
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 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법인	경쟁계약	제7조제3항 에 따른 위탁대행료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
면적(m²) × 인접지공시지가 ×
면수 × 25/1,000 × 점용기간
(년)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m²)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

	$\frac{1,000 \times \text{점용기간(년)} \times \text{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1 $\frac{\text{대당 주차구획면적(m}^2\text{)} \times \text{면수} \times \text{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times 25}{1,000 \times \text{점용기간(년)} \times \text{운영일수}} \div 365$
제8조(주차장의 설치등) ①도시계획결정을 얻어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u>당해</u> 도시계획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의 설치등) ① ----- ----- ----- <u>해당</u> ----- ----- ----- -----.
②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u>당해 주차장설치</u> 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u>노외주차장을 설치, 폐지, 변경한 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u> ----- <u>해당 주차장 설치</u> ----- ----- -----.
③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④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아스콘), 콘크리트, 블럭에 준하는 재료로 포장하거나 기타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은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공영주차장(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의 경우 경차전용주차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경차전용주차구획에 "경차전용"이라 표시하여 경형자동차 이외 차량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징수방법을

④ -----
----- 블럭-----
----- 그 밖의 -----
-----.

----- 아니하
다.

⑤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

⑥ -----

----- 따른 -----

-----.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
수방법으로 하며, -----
-----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3. (생략)

②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
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
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
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
해 환불한다.

1. 회수 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
한 요금

2. 정기 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
한 요금

<신 설>

제10조(이용제한) ①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

정하여 징수-----.

1. ----- 따른 -
--

2.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은 주차요금을 반환한
다.

1. 주차권 발행 이후 주차장 이
용을 중지시키거나 주차장을
폐지한 경우

2.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반
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회수 주차권: 잔여매수에 대
한 주차요금을 반환

2. 정기 주차권: 잔여기간에 대
한 주차요금을 반환

제10조(이용제한) ①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사용을 제한
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시간, 제

한하고자할 때에는 제한시간,구역,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당해주차장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다만,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제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및배치등은 [별지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사용제한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노상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
----- 화물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 외-----
-----.

-----.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 ① 노외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①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부설주차장 제외)의 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100분의 90이하
2. 용적율:1천 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60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

<삭 제>

③ ----- 평행주차형식-----
----- . ----- 노
상주차장 ----- 해당 -----

----- 아니하는 -----
주차형식으로 -----.

<삭 제>

하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
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
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
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
이 1.8배 미만인 경우 1.8
배로 한다.

다.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
를 기준으로 함.

제13조(주차장설치 심의등) 법 제
12조제6항 및 제19조제10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
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
향
3. (생략)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
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제13조(주차장 설치 등) -----

따라 -----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
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삭 제>

<삭 제>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

-- 제3조제1호에 따른 -----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 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5년후1개역의 1일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km)/8)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여야 한다.

가. 도시철도건설사업(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철도로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 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 설>

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 인원/210)× (철도연장(km)/8)

나.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2퍼센트

2. 제1호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삭 제>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신 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미터이내
2. 당해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
(행정 동.리를 말한다)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
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제15조의2(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은 다음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0퍼
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자주식주
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
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
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
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
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삭 제>

<삭 제>

제15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의 산정기준 등) ① -----
본문에 따라 -----

----- 설치비용-----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생략)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
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
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
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하
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
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
계비와 감리비를 포함 한다)
로 한다. 다만, 당해 공영노외
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
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
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

_____.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무상사용 노외주차
장-----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

3. 제2호의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제2호의 건축비는 해당 노외
주차장 -----
----- 포함한다---
-----, ----- 해당 노외주차
장이 ----- 1년 이상

-----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

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
치비용의 3분의1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19조의 1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감액한다.

1. (생략)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 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

이 조사하여 -----

산정한다.

②-----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 3분의 1-----.
<단서 삭제>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건축물 -----

-----.
3. -----

-----.
----- 경우에
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한 금액을[별표1]의 월정기(주,야간)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 까지로 한다.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당해 시설물 준공검사필증(가사용승인서)을 교부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
--.

4. 제2호의 주차구획 --- 18제곱미터-----.

--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

----- 날로부터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월정기(주간, 야간) 주차요금-----
----- 만료일까지-----
-----.

② 제1항에 따른 -----
----- 해당 -----

-----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에 따라
--.

제17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관리 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1. 주차대수 20대미만의 부설주차장,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2.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주거용 부설주차장과 타용도 부설주차장과 구분되어 있고 출입구가 다른 경우의 주거용 부설주차장
3.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주거용과 타용도 부설주차장의 구분이 안되는 당해 부설주차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

----- 제4항에 따라 -----

②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 단독주택 -----

2. -----
- 타 용도 -----

3. ----- 타 용도

해당 -----

③ 제2항에 따라 -----

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4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신 설>

-----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그 밖에 ----- 제6조의 규정 -----.

제1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제외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따른다.

③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신 설>

제20조(보조대상)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자로 개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며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 단,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다.

1. ~ 4. (생략)

제21조(보조금액) 제19조의 규정
에 의한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
비용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주차면 1면당 최고 15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는 없으며,
유형별 보조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④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illegible]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보조금액) 제19조에 따른

1.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주차구획을 설치한 <u>경우</u> : 120만원 이하 2.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주차구획을 설치한 <u>경우</u> : 130만원 이하 3. 대문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한 <u>경우</u> : 150만원 이하 4. <u>이웃간경계담장</u>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한 <u>경우</u> : 세대당 130만원 5. <u>기타</u>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u>경우에는</u> 증가대수당 최고 50만원 추가지원 제22조(주차장 설치의 신청) ① <u>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설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② <u>설치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보조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u> 제23조(지급방법) ① 신청자가 공사완료 후 보조금을 <u>지급 받고</u>	1. ----- ----- <u>경우:</u> ----- -- 2. ----- ----- <u>경우:</u> ----- -- 3. ----- - <u>경우:</u> ----- 4. <u>이웃간 경계담장</u> ----- ----- <u>경우:</u> 세대당 130만원 이하 5. <u>그 밖에</u> ----- ----- -- <u>경우:</u> ----- ----- 제22조(주차장 설치의 신청) ① <u>제1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u> ----- ----- <u>별지 제2호 서식의</u> ----- -----. ② <u>시장은 설치신청서-- 현장 확인</u> ----- --. 제23조(지급방법) ① ----- ----- <u>지급받고자</u>
--	---

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주차시설관리) 시장은 보조금으로 설치된 주차시설을 년 2회(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주차시설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한다.

제25조(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2. (생략)
3. 법·영 또는 이 조례를 위반

- 별지 제3호서식의 -----

----- 별지 제4호서식의 -----
----- 시장에게 제출-----.

② ----- 지급청구서-----

-----.

제24조(주차시설관리) -----
----- 연
2회-----
----- 별지 제5호서식-----
작성·관리한다.

제25조(보조금의 회수) ----- 제19조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
----- 따라 -----

-----.

1. 2. (현행과 같음)
3. -----

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과징금의 처분) ①영 제1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
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
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
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
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
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
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
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
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
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 따른 -----

제26조(과징금의 처분) ① <삭
제>

② -----

--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
한-----

-----.

③ --- 제2항에 따라 -----

----- 따른 -----
-----.

--.

<삭 제>

<u>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u> ⑤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u>제2항에 따라</u> ----- ----- ----- -----. 제28조(시행규칙) ----- - <u>필요</u>----- -----.
--	---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 ⑤ 생략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

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생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⑫ 생략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

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생략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

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

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릭스 이상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릭스 이상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가. 특별시	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다. 가목 나목 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삭제 <2013.5.31.>

② ~ ⑧ 생략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 3. 생략

② ~ ③ 생략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 9. 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7. ~ 22. 생략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 ⑩ 생략

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⑬ ~ ⑰ 생략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주차장 요금 수입 감소(안 제4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주차 요금 감면에 따른 주차장 수입금 감소로 세입예산 감소가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2,474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수	4,948대×500원	2,474

- ※ 산출근거 : 저공해 자동차 1회 1시간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0원 발생(50% 감면시 500원)

4. 작성자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행정 7급 전종훈(054-480-6273)

소관 실·과		교통행정과
입 안 자	과 장	김 덕 종
	담 당	최 범 식
	담 당 자	전 종 훈 (480-6273)